
定 款

주식회사 코오롱

제1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코오롱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LON CORPORATION이라 표시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 경영 지도 · 정리 · 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사업
3.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사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5.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6. 교육서비스관련 사업 및 대행용역 사업
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8.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관련 사업
9. 통신업 및 통신서비스 관련 사업
10.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1. 미술관운영업
12.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 투자 및 부대사업

제 3 조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필요한 국내외 지역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olo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사채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 5 조의 2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5 조의 3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이때, 종류주식은 제6조 내지 제6조의4의 주식을 의미한다.

② 삭제

제 5 조의 4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 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6 조 (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 ②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 12%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서는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이사회는 제1종 종류주식 발행 시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제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6 조의 2 (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의 수는 칠백만주로 한다.
-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만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다.
- ③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단,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비누적적, 비참가적인 것으로 한다.
- ⑤ 제2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 우선 기한은 무기한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한다.

제 6 조의 3 (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6조에 의하여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발행할 전환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 주식의 총 발행가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같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 6 조의 4 (상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6조 또는 제6조3 규정에 따라 제1종 종류주식 또는 전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제1종 종류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상환주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의 말일에는 잔존하는 당해 상환주식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하며,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 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로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본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제6조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않는 주식과 신주배정의 경우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한다.
- ② 이사회는 전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삭제
 -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약증서(D 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주식 및 기타 금전 외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7 조의 2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7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결의 시 정한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 (삭제)

제 9 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제6조의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의 발행일 후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제6조의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의 발행일 후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며 납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는 이사회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의하여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 주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소집권자 및 공고)

- ① 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삭제
-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백분의 일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에 규정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4항의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⑥ 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 (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총회 의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 17 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 19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십분의 일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0 조 (의결권의 위임)

주주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총회의사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이거나 법정대리인에 한하며, 총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과정의 요령 및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본 회사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

제 23 조 (이사과 감사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그 중 1/4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④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4 조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선정)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정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 이사회는 일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일인과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회의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 및 의장)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제 27 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본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27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의 3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8 조 (이사회 결의)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 기획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
- 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9 조 (회사의 대표)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고 본 회사 전반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며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 30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1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사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3 조 (이사와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법정원수에 미달치 않는 한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보결선임에 의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전항의 경우 전임자가 없었을 때에는 최장기간 취임한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4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4 조의 2 (이사과 감사의 책임)

이사 및 감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는 본 회사가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한다. 단, 그러한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배상 또는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사 또는 감사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 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본회사의 비용으로 가입한다.

제 34 조의 3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계 산

제 35 조 (회계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매년도마다 결산한다.

제 36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사업년도 중에 생긴 총수익금액에서 영업상 일체의 경비 및 손실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38 조 (배당)

- ① 주주배당금에 관하여,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38 조의 2 (삭제)

제 39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기타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1995. 9. 28)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1995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5)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 ②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 례)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2. 28)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1997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 (보통주식배당율 + 1% 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 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1998. 3. 20)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의 변경(3년) 임기는 43기 정기주주총회시 선임된 임원부터 적용되며 기 선임된 임원은 종전의 규정(2년)에 의한다.

부 칙 (1999. 3. 10)

① (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7)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3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9)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4)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3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9)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6)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1)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1)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0)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3)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고,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에 관한 합병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7)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설회사가 되는 인적분할의 분할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2)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6)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3, 제5조의 4, 제10조의 2, 제12조, 제13조 개정내용은 2019년 3월 26일 이후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기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경과규정) 제9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 제1항의 발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사채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2021. 03. 29)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28)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